의안번호	제 236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7월 19일 (제374회)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의 안

제 안 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7월 19일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의 안

의안 번호	236

제안연월일 : 2019. 7. 19.
제 안 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주 문

○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을 건의함.

□ 제안이유

○ 제천 화재참사 발생후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는 위로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 해 왔으나 도지사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결렬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을 건의함.

□ 보내는 곳: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의 안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에는 위로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계속 해 왔으며, 충청북도의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하루빨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소방 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의결(‘19. 4. 22)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고 소방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는 현장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9. 7. 1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